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- 3)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, 사업구역의 특수성,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,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
 -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	법 제31조의4 제1항제2호	150	450	900

나.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의4 제1항제4호	150	450	900
다.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, 그 밖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	법 제31조의4 제1항제5호	150	450	900
라.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·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31조의4 제1항제6호	150	450	900